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|

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 
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황 희<br>(문화체육관광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,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전승기량 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인정요건에 반영하고, 전통기술 개발 및 전승자의 창업·제작·유통 등을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명예보유자 인정요건 정비

(안 제16조, 제17조, 제18조)

-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실시 등 그 영향력이 큼에 따라, 인정요건에 전승기량 뿐 아니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적 자질을 반영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 및 전수생 권익보호 증진
- 현행 규정\*에도 보유자,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에 대상자의 평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.

- \*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(훈령 제55호) 별표1서식(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)

#### 나. 법률 위임사항 중 미비규정 신설 (안 제32조의2, 제33조의3 신설)

- 법 제40조(전통기술 개발의 지원)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
- 법 제44조(창업·제작·유통 등 지원)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

#### 다.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권한 및 사무 합리적 조정 (안 제35조)

- 문화재청, 국립무형유산원, 한국문화재단 내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조정

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) 입법예고 예정

##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

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

제1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

제1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전승교육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

제27조제1항 중 “문화재청장은”을 “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2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전통기술 개발 지원 기준 등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, 공간 조성

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,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일 것
2. 전통적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일 것
3. 전승공예품의 디자인, 포장재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에 필요한 사항일 것

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,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제33조의3(창업·제작·유통 등 지원기준 및 방법)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,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전승공예품 생산, 판매, 전시·홍보,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전통적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·홍보·유통에 관한 사항
3. 전승공예품 또는 전통적 공연예술의 해외 전시 및 공연,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,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제35조의 제목“(권한의 위임)”을“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1호를 각각

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의2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0호의2를 제14호로 한다.

제35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호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에 대한 지원
6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·지원
7.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및 공개점검
3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에 대한 지원

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.

1. 「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」에 따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활용 및 홍보

2.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 
홍보

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  
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.

1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지원 및 정산
2.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비용 지원 및 정산, 모니터링
3. 전통기술 개발관련 조사 및 연구
4. 전승공예품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활성화 지원
5. 전승공예품 인증 취소관련 조사업무
6.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을 위한 작품구입 및 대여관리
7. 전승공예품 디자인 개발 및 판매활성화 사업 지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 
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|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|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보유자 등의 인정) ① 문<br>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<br>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<br>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<br>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<br>인정할 수 있다.<br>1. ~ 3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<br><br>② ~ ⑤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16조(보유자 등의 인정) ① 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16조(보유자 등의 인정) ① 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7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문<br>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<br>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<br>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<br>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<br>두 고려하여야 한다.<br>1. ~ 3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<br><br>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<br>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<br>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<br>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|   | 제17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17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4.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<br>보유단체로서의 명예와 품위<br>를 갖추고 있을 것<br>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4.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<br>위를 갖추고 있을 것<br>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
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③·④ (생략)

제18조(전승교육사의 인정) ① (생략)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27조(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명예보유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전승교육사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전승교육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

제27조(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전통기술 개발 지원 기준 등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가 다음 각

<신 설>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,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,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일 것

2. 전통적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일 것

3. 전승공예품의 디자인, 포장재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에 필요한 사항일 것

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심사,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제33조의3(창업·제작·유통 등 지원기준 및 방법)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, 공간 조성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전승공예품 생산, 판매, 전시

제35조(권한의 위임)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.

<신 설>

1. (생략)

1의2. 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· 홍보,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
2. 전통적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·홍보·유통에 관한 사항

3. 전승공예품 또는 전통적 공연예술의 해외 전시 및 공연,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심사,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.

1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예 보유자에 대한 지원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4. 5. (현행 제1호의2 및 제2호와 같음)

6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 장학생 선정·지원

7.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

3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
4.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

5. ~ 10의2. (생략)

11.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점검

<신설>

<신설>

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및 공개점검

3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에 대한 지원

<삭제>

8. ~ 14. (현행 제5호부터 제10호의2까지와 같음)

<삭제>

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.

1. 「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」에 따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활용 및 홍보

2.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홍보

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장

에게 위탁한다.

1.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지원 및 정산

2.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비용 지원 및 정산, 모니터링

3. 전통기술 개발관련 조사 및 연구

4. 전승공예품 인증을 위한 심사 및 활성화 지원

5. 전승공예품 인증 취소관련 조사업무

6.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을 위한 작품구입 및 대여관리

7. 전승공예품 디자인 개발 및 판매활성화 사업 지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2) 481 - 4968 |